



서울고등법원

제 13 민사부

판 결

사 건 2014나12630 정정보도

원고, 피항소인 1.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  
대표자 당회장 유종훈

2. 박윤식

원고들 주소 서울 구로구 오류로8라길 50(오류2동 147-76)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정  
담당변호사 송명호

피고, 항소인 1.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  
서울 종로구 창경궁로16길 6-4 5층(인의동 12)  
대표이사 장경덕

2. 정윤석  
안양시 동안구 시민대로 161 안양무역센터 8층 타호비즈니스  
센터 108호 기독교포털뉴스

피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조병훈, 김지은

제 1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15. 선고 2013가합71468 판결

변 론 종 결 2014. 8. 27.

판 결 선 고 2014. 9. 26.





주 문

-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 3. 제1심 판결 주문 제2의 가항을, "피고 정윤석은" 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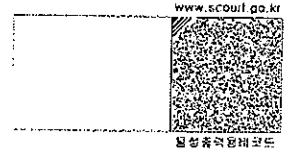
1. 청구취지

가. 피고 주식회사 한국교회문화사(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교회와 신앙'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amennews.com>)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1], [별지2]의 각 정정보도문을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회사가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정윤석은 이 사건 판결 송달 후 3일 이내에 '기독교포털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ortalnews.co.kr>) 초기화면 중앙 상단에 [별지3] 정정보도문을 1주일 동안 게재하되, 제목과 내용은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제목 및 내용과 동일한 크기 및 활자체로 하고, 초기화면 기사 목록에서 제목을 클릭하면 내용이 검색되도록 하며, 이





후로는 정정보도 대상기사의 하단에 이어서 게재하여 정정보도 대상기사가 검색되는 한 함께 검색될 수 있도록 하라.

피고 정윤석이 위 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위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한의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 이 유

### 1. 피고 정윤석의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피고 정윤석은, 이 사건 소가 피고 정윤석의 언론보도가 있는 2013. 6. 24.부터 3개월이 경과한 2013. 9. 26.에 제기되었으므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하 '언론중재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이 정한 제소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갑 제1호증의 3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정윤석이 2013. 6. 24. 인터넷 '기독교포털뉴스' 사이트에 원고 박윤식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들이 위 기사가 게재된 당일 또는 그로부터 이틀 이내에 위 기사가 게재되었음을 알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는 없다. 또한 원고들이 위 언론보도가 있을 때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상, 제소기간을 도과하였다는 피고 정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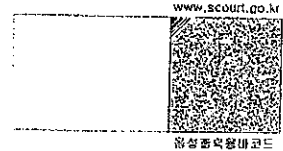
석의 주장은 이유 없다.

## 2. 판단의 전제

1)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회사가 보도한 [별지4] 2013. 8. 4.자 기사에서 ① 원고 박윤식이 유효원으로부터 원리공부를 하였으며,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있고, ②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 몸담았다고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고, [별지5] 2013. 8. 9.자 기사에서 ① 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으며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한 박윤식이 원고 박윤식이고, ②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우고 1962년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한 박윤식 전도사가 원고 박윤식이며, ③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켰고, ④ 원고 박윤식이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를 가르친 문제로 해고되었으며, ⑤ 원고 박윤식의 신앙사상이 전도관 박태선 교주의 '피의 사상'에서 나왔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이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2013. 8. 4.자 기사의 ①, ② 부분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2013. 8. 9.자 기사의 ①, ③, ④ 부분 및 ② 중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② 중 원고 박윤식이 1962년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위 기사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⑤ 부분은 피고 회사의 의견을 적시한 것일 뿐 사실의 적시가 아니라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2) 또한 원고들은 이 사건 소로써, 피고 정윤석이 보도한 [별지6] 2013. 6. 24.자 기



사에서 ① 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다가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우고 1962년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한 박윤식 전도사가 원고 박윤식이고, ②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활동하고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였으며, ③ 원고 박윤식이 원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평강제일교회(이하 '원고 교회'라 한다)에서 설교한 '씨앗속임'은 섹스 모티브를 기저로 한다고 보도한 부분이 모두 허위라고 주장하며 정정보도를 청구하였다.

이에 대하여 제1심은 [별지6] 2013. 6. 24.자 기사의 ① 중 원고 박윤식이 1957년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고, 같은 해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 및 ② 부분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이 부분에 대한 정정보도를 명하고, ① 중 원고 박윤식이 1962년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근무하였다는 부분은 위 기사에 그러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③ 부분은 의견 또는 논평을 표명한 것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이 부분에 대한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3) 위와 같은 제1심 판결에 대하여 피고들만 항소하였다. 제1심 판결 중 원고들이 패소한 부분에 대한 이 법원의 판단은 제1심의 판단과 동일하므로 제1심 판결문의 각 해당부분을 그대로 인용하고, 아래에서는 피고들이 항소한 부분, 즉 피고 회사의 2013. 8. 4.자 기사의 ①, ② 부분 및 2013. 8. 9.자 기사의 ①, ③, ④ 부분 및 ② 중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 피고 정윤석의 2013. 6. 24.자 기사의 ① 중 원고 박윤식이 1957년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고, 같은 해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 및 ② 부분에 대하여 판단한다.

### 3. 기초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교회는 원고 박윤식이 1968년 10월경 설립한 교회로서 그 명칭이 설립 당시에는 일석교회였으나, 1977년 7월경 대성교회로, 1994년경 평강제일교회로 변경되었다. 원고 박윤식은 현재 원고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피고 회사는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정운석은 인터넷신문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회사는 2013. 8. 4.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에 「과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다른가? [특별기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 전도관 사상 ②」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박윤식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소위 '숨겨진 말씀' 교리를 주장하는 바하이즘과 유사할 뿐 아니라 박윤식 씨가 한때 유효원 씨로부터 원리공부를 했던 통일교의 '구원섭리의 실패' 라는 교리이고,  
■ 예수님의 피가 썩은 피가 아니라는 박윤식 씨의 주장은 그가 한때 몸담았던 전도관 출신 영생교 조희성 교주의 '피의 원리' 라는 사상이다.

○피고 회사는 2013. 8. 9.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에 「'혈통유전설' 이단들 ... 그리고 박 씨의 사라진 3년 [특별기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 전도관 사상③」 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씨의 전도관·통일교 행적  
■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씨에게서 전도관 박태선 교주와 유사한 '피의 사상' 이 보이는 것은, 그가 전도관 전도사였고, 통일교 원리공부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의 전도관 행적과 통일교 행적은 그동안 여러 법정다툼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못하였다.  
■ 1962년 11월 10일 후암동 김증화 집사 댁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다.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는 목포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2 3, 을 제2호증의 1, 2, 3 각 기재에 편본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1]

○원고 교회는 원고 박윤식이 1968년 10월경 설립한 교회로서 그 명칭이 설립 당시에는 일석교회였으나, 1977년 7월경 대성교회로, 1994년경 평강제일교회로 변경되었다. 원고 박윤식은 현재 원고 교회의 원로목사이다.

○피고 회사는 인터넷신문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을 운영하는 법인이고, 피고 정윤석은 인터넷신문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를 운영하는 자이다.

[2]

○피고 회사는 2013. 8. 4.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에 「과연 예수님의 '피'는 사람의 '피'와 다른가? [특별기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씨 전도관 사상 ②」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별지4]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박윤식 씨의 이와 같은 주장은 소위 '숨겨진 말씀' 교리를 주장하는 바하이즘과 유사할 뿐 아니라 박윤식 씨가 한때 유효원 씨로부터 원리공부를 했던 통일교의 '구원섭리의 심폐'라는 교리이고,  
 ■ 예수님의 피가 섞은 피가 아니라는 박윤식 씨의 주장은 그가 한때 몸담았던 전도관 출신 명성교 조희성 교주의 '피의 원리'라는 사상이다

○피고 회사는 2013. 8. 9. '교회와 신앙'(http://www.amennews.com)에 「'헌공유전설' 이단들 ... 그리고 박 씨의 사라진 3년 [특별기고]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씨 전도관 사상③」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별지5]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6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씨의 전도관 통일교 행적  
 ■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 박윤식 씨에게서 전도관 박대선 교주와 유사한 '피의 사상' 이 보이는 것은, 그가 전도관 전도사였고, 통일교 원리공부를 했기 때문이지만, 그의 전도관 행적과 통일교 행적은 그동안 여러 법정다툼을 통해서도 입증되지 못하였다.  
 ■ 1962년 11월 10일 후암동 김중화 집사 댁에서 첫 예배를 시작했다 <한대종교> 1983년 3월호에는 목포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쫓겨났다고 함 (p.102에서는 1983년 4월호 에고기사를 소개하면서 '11 목포전도관 전도사 박윤식의 처녀사냥 전말' 이라고 나눔)  
여기서 유의해 볼 것은 ... 김종화 여인(김 여인은 문선영 교주의 평양 광야교회 시절 '어린양 혼인잔치' 등 해서 이혼 당한 차이다)은 원리공부 시 안개 관 통일교 교인이라는 점이다

■ 1984년생인 딸 박선실 씨의 나이 8살 때(1955년) 가솔한 것을 보면 1955년도에 시최한 박태선의 전도관 운동에 뛰어들 것이 확실한 것이고, 그가 최근 펴간한 '구속사 시리즈' 의 저자 서문에서, 우회적으로나마 목회사역을 '목포 전도관 전도사' 무 시작한 1957년이었던 사실은 암시하고 있다.

■ 박윤식 씨가 박태선 전도관 전도사였다는 결정적인 증거도 드러났다. 그것은 평강제일교회(구. 대성교회)가 김영우 목사(아기때 문화사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서울중앙지법 2008가합94504 출판권 침해/배포금지 등) 사건에 제출된 증거자료로 탁영환 소장의 유품 중 <전도관 김두재 목사의 녹취록>이라는 증거자료나.

이 녹취록을 보면 "박윤식 그 사람의 모든 신앙의 행태가 사기이므로 목사라는 명칭도 사기다. ...목포 전도관에 있을 때 1958년도인가 1959년도에 그 당시 박윤식으로 인해서 큰 혼란이 있었다. ... '자기는 총각이다' 라고 했는데 이로 인해 대혼란이 일어났다. 최 장로 딸 등 처녀들을 건드렸다 김 권사 딸도 관련되었다. 문제가 밝혀지는데 처녀들도 있고 젊은 유부녀들도 있었다. 그 여자들은 절대 총각으로 믿었다. ... (그 후 박태선의 주선으로 천재 김효순과 자녀들(3명)을 목포로 내려 보내 대침 확인을 한바 있었다고 함) 나갈 때는 박태선이 가 끊어 축출했다. ...그기(김효순) 박윤식의 처라는 것은 박태선의 말을 듣고 안 것이 아니라 김효순과 같이 씌운 가족사진도 있다 하고, 또 가족사진은 박태선이 직접 구해 주어서 직접보아서 확인했다" 는 김두재 목사의 진술 내용이 있다.

■ 필자가 참간호부터 어렵게 구한 통일교 <사보>(통일교역사편찬위원회가 발간) 제166호를 보면, 통일교의 2인자였던 유효원 씨의 임기가 그의 부인 사보 씨의 제공으로 공개되었는데, 박윤식 씨 관련 부분만 간추려 보면 그 내용은 아래와 같다.

① 1957년 목포 전도관 분원파동으로 1958년에는 박윤식 전도사가 책임 인도하며, 이승규 전창배가 목포 통일교회에 입교, ② <사보> 제166호 유효원 전 협회장 1957년 임기에 11월 6일부터 조동식, 목포 전도관 박윤식 전도사가 원리공부를 시작해 1958년 2월 16일까지 무려 19회에 걸쳐서 원리공부, ③ 1957년 12월 12일 "박 전도사와 그의 신부였던 정청애 양을 상대로 말씀하다" (11월 12일 13일 간) (이는 <현대종교> 1983년 3월호에 실린 에고기사에 신빙성을 더해 주는 내용이다), ④ 1957년 11월 5일 목포 전도보고에 '전도관의 분업이 시작되다', ⑤ 1957년 11월 24일 박윤식 "목포 전도관 교인들에게 구대담하고 간증" 함, ⑥ 1958년 1월 8일 전도관 유효원 전도사님 공임교로 이관어음, ⑦ 1958년 2월 16일 저녁 설교를 한 박윤식과 김종화 여인이(평양 광야교회에서 문선영과 '어린양 혼인잔치' 등 치르고 이혼한 여인이요, 훗날 후암동에서 박윤식과 첫 예배를 드린 여인) 만난 이야기 이후 박윤식 씨는 통일교에서 원리공부중 하며 만났던(1958년 2월 16일자 임기) 김종화 여인을 3년 6개월 지리산 기도 후 하산해서 재입 믿겨 믿었다고 하며(<참평안> 1991년 6월호, p.27), 이 김 여인의 집에서 박윤식 씨가 서울 개척의 첫 예배를 드렸다는 것이다(<현대종교> 1983년 3월호, p.89)

■ 과거 전도관에서 발행했던 <국제기독교뉴스>를 참간호부터 소장하고 있는 문 모씨를 성남으로 찾아가 만나서 "1957년 9월 9일 1면에 회순 전도관 차潤植 전도사가 신문사를 방문한 사실(회순 전도관 광복점 축하 광고도 게재되어 있음)" 내용을 확인할 수가 있었다.

■ 박윤식 씨의 자필이력서에는 이때에 '성경 학학' 을 했다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목포 전도관과 회순 전도관, 그리고 통일교 본부란 찾아가 원리공부를 했던 뽕뽕하지 못한 때이기 때문에 밝히지 못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 박윤식 씨의 구속사시리즈 출판 홍보동영상에서는 지리산 입산 3년 6개월의 첫 시기집 "1980년대 초" 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는 1961년 초부터 1981년 7월 해고되기까지의 7개월 기간은 박윤식 씨가 평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중 가르친 문제로 해고되었다는 기록도 보이는데, 지리산을 찾아 기도해야 할 정도로(심제 3년 6개월을 기도했는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하는 자가 있다) 이 문제가 심각했던 것으로 보이며...

■ 박윤식 씨의 "2007년 출소한 중의 사역이 만 50주년이 되는 회년" 이라는 학교부등한 표현에는, 1957년 목포와 회순전도관 근무로부터 통일교에서 원리강론을 배우고, 설교한 년도까지를 분명히 포함하고 있다







■ 박윤식 씨는 "2007년이 복회 50주년" 이라는 이 한마디 말로, 스스로가 그동안 감추었던 전도관과 풍림교 전도관 스스로 시인하고 말했다

○ 피고 정윤석은 2013. 6. 24. '기독교포털뉴스'(http://www.kportalnews.co.kr)에 「"박윤식 씨는 전도관·풍림교 출신자" 세이연, 기자회견서 이단연구가 이영호 목사 발제」 라는 제목 하에 아래와 같은 문구가 포함된 [별지6] 기재 기사를 게재하였다.

■ 전도관 박태선 씨는 예수님을 입에 담지 못할 정도로 욕하던 사람이다 이런 곳에서 박윤식 씨가 전도사 생활을 했다는 것이다.

■ 이영호 목사는 1959년이 되기 전, 박 목사가 '박태선 전도관', '풍림교' 와 관계를 맺기 시작했다고 해석한다 전도관 측 유관지인 국제기독교뉴스 1957년 9월 9일자 인사교류란에는 '박윤식 전도사' (화순전도관)가 '인사차 레사' 했다는 소식이 나온다 박윤식 씨가 당시 전도관 전도사로 활동하던 때 전도관측 신문에 인사란 하기 위해 방문했다는 것이다

■ 이영호 목사는 이 씨가 2012년 3월, 자신을 만난 자리에서 목포전도관 개관준비를 하면서 박윤식 전도사와 같은 방에서 생활을 했다고 주장하는 동영상은 공개하기도 했다.

■ 이런 박윤식 씨가 1957-1958년 어간에 '풍림교' 와 접촉한 것으로도 파악된다 유효원의 입기에서 그의 이름이 등장한다 유 씨는 풍림교의 초창기 협회장급 지냈던 유력 인물이다. 문선명 씨의 원리강론의 집권에 상당부분 관여한 사람으로도 알려져 있다. 이런 유 씨의 입기에 따르면 전도관 박윤식 전도사가 풍림교 교리를 배웠다고 기재했다.

■ 이영호 목사는 "박 씨 자신의 증언에 의해 그가 목회를 시작한 것은 1957년이라는 사실이 분명하다" 며 "겉국 전도관 전도사 생활을 첫 확의로 생각하고 계산한 것이 옳았었다" 고 지적했다 전도관에서의 이력을 '복회경력' 으로 생각하는 박 씨는 겉국 전도관·풍림교 출신이라는 의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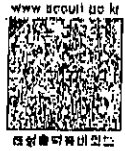
■ 이영호 목사는 "동미신감리교회 전도사로 있었다는 것이 그가 풍림교나 전도관 출신이 아니라는 증거가 될 수 없다" 고 지적한다

#### 4. 당사자들의 주장

##### 가. 원고들

1) 피고 회사가 2013. 8. 4.자 기사에서 [1] 원고 박윤식이 유효원으로부터 원리공부란 하였으며, 구원섭리의 실패를 가르친 적이 있고, [2]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 몸담았다고 보도한 부분은 허위이고, 2013. 8. 9.자 기사에서 [1] 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으며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란 방문한 박윤식이 원고 박윤식이고, [2] 1957년 11월경부터 풍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박윤식 전도사가 원고 박윤식이며,





[3]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활동하면서 처녀사냥 문제를 일으켰고, [4] 원고 박윤식이 동마산교회에서 통일교 교리란 가르친 문제로 해고되었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은 모두 허위이다.

2) 피고 정윤석이 2013. 6. 24.자 기사에서 [1] 1957년경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있다가 1957년 11월경부터 통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운 박윤식 전도사가 원고 박윤식이고, [2]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활동하고 전도관이 운영하는 신문사를 방문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한 부분은 모두 허위이다.

3) 따라서 피고들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정정보도를 할 의무가 있다.

#### 나. 피고들

피고들이 보도한 내용은 이단전문가들이 조사한 내용을 근거로 한 것이고, 목포전도관에 있던 김두재 목사의 증언녹취록, 충신대화교 총장, 진용식 등에 대한 법원의 판결 내용, 원고 스스로 전도관과 통일교 집회에 참석한 적이 있다고 인정하였고 2007년을 사역 만 50주년이라고 언급하여 1957년 전도관 경력을 인정한 점, 탁병환 살해사건 후 검찰이 원고 박윤식의 과거 행적이 밝혀진 것을 막기 위해 탁병환 살해단 지시하였다고 수사결과를 발표한 점 등에 비추어 위 보도내용은 모두 사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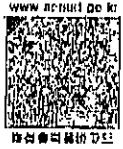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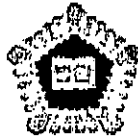
### 5. 판단

#### 가. 전도관, 통일교 활동을 한 박윤식의 존재

##### 1)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4 내지 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전도관이 1957. 9. 9. 발행한 '국제기독교뉴스' 1면에는 인사차 위 신문사를 내사한 사람의 명단에 '朴潤樞 전도사(화순전도관)'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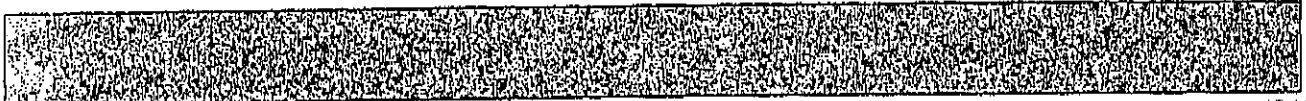
○재단법인 세계기독교공인신령협회가 1981년 11월에 발행한 '몽일세계'에는 '오래된 교회란 찾아본다 / 목포교회, 몽일가에 열풍을 일으켰던 목포교회'라는 제목으로 1957년 11월부터 이듬해 봄까지 전도관 교인들이 집단으로 몽일교회로 개종하고 이적해왔는데 그때 개종한 사람들이 전도관 박윤식(朴允植) 전도사를 비롯하여 상당수가 있었다고 기재되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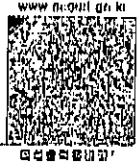
○세계평화공인가정연합회(세칭 몽일교) 역사편찬위원회가 1990년 12월에 발행한 '사보(史報)'에는 '유서 깊은 옛 모습, 배후엔 파란만장한 역사의 곡절이 -목포교회, 몇 분의 권사님들의 수고 빛나고-'라는 제목으로, 1958년 목포의 전도관 분열파동으로 한때 갈라져 나온 박윤식 전도사가 책임 인도하면서 이승규, 전창배 씨 등이 입교하기도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세계평화공인가정연합회 역사편찬위원회가 2002. 12. 30. 발행한 '사보(史報) 몽권 제 166호에는 유효원 전 협회장이 1957년 9월부터 1958년 4월까지 기재한 일기가 공개되었는데, 위 일기 중 1957. 11. 6.부터 1958. 2. 16.까지의 기재 부분에 목포 전도관 지도전도사인 박윤식(朴潤樞)이 서울 소재 몽일교 본부에서 문선명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하였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1957년경 목포 전도관과 화순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1957. 11. 6.경 몽일교에 입교하여 그로부터 3개월 이상 서울 소재 몽일교 본부에서 문





선명의 강의를 듣고 설교를 하는 등 교육을 받고 풍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박윤식 (한자명은 朴潤植 또는 朴允植)'이 존재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나. 원교 박윤식과 동일성 여부

갑 제2 내지 11, 12, 18, 21 내지 25, 30호증, 을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들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풍일교에 입교하여 풍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박윤식과 원교 박윤식은 동일인이 아니라고 판단된다.

1) 앞서 본 1990년 12월에 발행된 '사보(史報)'에는 아래의 내용과 함께 1962년 12월에 촬영된 당시의 목포교회 교인들의 단체사진이 게재되어 있다.

1958년 목포의 전도관 분업파동으로 한때 길라재 나온 박윤식 전도사가 책임 인도하면서 이승규, 진창배 씨 등이 입교하기도 하였다 그 후 이 교회는 김화옥, 강경련, 김순겸, 강현실, 감순애, 유광연, 이오한 목사 등 여러분이 수습 정리하기에 애를 많이 썼지만 그 중에서도 배 힘을 쏟은 인도자로서는 김택희 권사와 한건수 목사 등이 있고 1962년에 박종우씨 시대에 이르러 한때 훌륭하게 부흥되기도 했으나 결국 그마저 좋은 결실을 못 얻게 되어 좌초되기에 이르렀다. 이 사진은 바로 그 조금 전의 사진인 듯 하다. 사진에 박전도사가 검은 복장을 하고 중앙에 앉아 있고 그 왼편에 다주할머니라고 할 수 있는 김소례 할머니가 앉아 있으며 그의 바깥 편에는 순회 나갔던 감순애 순회사와 그 옆에 김경애 씨가 명확해 있다.

또한 위 1990년 12월에 발행된 '사보(史報)'보다 9년 먼저 발행된 '풍일세계' 1981년 11월호에는 목포교회의 역사가 구체적인 연도와 인물명, 사건 등과 함께 상세하게 기재되어 있는데, 1959. 11. 20. 장덕희 권사가 인도자로 부임하고, 1960. 7. 20.부터 실시된 제1차 하계 40일 전도기간에 장덕희 권사는 해남으로 찬발하였고, 다음해에 인도자로 한건수씨가 교역장으로 부임하였으며, 한건수씨가 나주교회로 떠나고 1965년 2월에 박종우씨가 '목포교역장'으로 부임하였고, 그가 목포교회로 부임하고 2년이 지날 때 7개의 지교회를 거느릴 정도로 목포교회는 다시 한번 전성기를 맞게 되었으며, 1967년에 비로소 성전을 갖게 되었다는 내용이 있다.





위 사보에 기재되어 있는 글의 전체 문맥과 위 글에서 박윤식은 '전도사'라고 칭하고 박종우에 대하여는 '씨'라고 칭하였을 뿐인 점, 통일세계에 의하면 박종우는 1965년 2월에 부임하였고 그 직함은 '교역장'인 점 등에 비추어 보면, 1990년 12월호 사보에 기재되어 있는 '1962년에 박종우씨 시대'의 '1962년'은 '1965년'의 오키로 보이고, 위 글에서 언급하는 사진 속에 있는 '박 전도사'는 목포의 전도관 분얼 과동으로 입교한 박윤식 전도사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런데 위 사진 속에 있는 '박윤식 전도사'는 그 무렵 촬영된 사진에 있는 원고 박윤식의 얼굴 및 최근의 원고 박윤식의 얼굴과 전혀 다르다.

2) 위 사진 속에 있는 '박윤식 전도사'는 1957년 11월 통일교회에 입교하여 서울에서 교육을 받은 후 적어도 위 사진이 촬영된 1962년 12월경까지 통일교 목포교회에서 활동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원고 박윤식의 그 무렵 행적은 이와 전혀 다르다. 즉 1960년 1월에 발행된 '감리교생활' 22권 1호에는 원고 박윤식을 1959년 12월에 동마산구역 서리담임자로 임명한다고 기재되어 있고, 1961년 11월에 발행된 '감리교생활' 23권 6호에는 마산구역 서리담임자 박윤식이 1961년 7월 교회를 떠났다는 공고가 실렸다. 또한 원고 박윤식과 처 민갑식이 1959년 8월경 동마산교회 건물 앞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이 있다.

뿐만 아니라 원고 박윤식은 1960. 9. 7. 마산시 회원동 75-1을 본적지로 하여 호적을 취득하고, 1960. 9. 17. 민갑식과 사이의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같은 날 장남 박휘한이 1958. 5. 5. 위 본적지에서 출생한 것으로 직접 신고하였고, 1961. 8. 3. 차남 박승천이 1961. 8. 1. 마산시 회원동 75에서 출생한 것으로 직접 신고하였다. 그 후 1963. 4. 17. 서울 영등포구 양평동 1가 217로 전적하였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 박윤식은 1959년 12월 동마산구역 서리담임자로 임명되기 전인 1958년경부터 이미 동마산교회에서 사역활동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고, 감리교에서는 이미 동마산교회에서 사역활동을 하고 있는 원고 박윤식을 서리담임자로 임명한 것으로 판단된다.

3) 앞서 본 유효원의 일기 1958. 2. 16.자에는 박윤식이 김종화를 만났다는 기재가 있고, 원고 박윤식은 '참평안' 1996년 6월호에서 3년 6개월 지리산 기도 후 하산해서 김종화를 제일 먼저 만났다고 기재하였다. 피고 회사의 2013. 8. 9.자 기사에서는 원고 박윤식이 하산해서 만난 김종화가 유효원의 일기에 나오는 통일교인 김종화이면서 평양 광야교회에서 문선명과 '어린양 혼인잔치'를 치르고 이혼한 여인이라고 기재하고 있으나, 원고 박윤식이 하산해서 만난 김종화(金稚花)는 원고 교회의 권사였던 사람이고, 유효원의 일기에 등장하고 문선명과 관련된 김종화(金稚和)는 다른 사람으로 보인다.

4) 국제종교문제연구소장 겸 '월간 현대종교'의 발행인이었던 탁명환은 원고 박윤식에 대하여 이단이라고 처음 문제를 제기하였다. 탁명환은 '월간 현대종교' 1983년 3월호, 4월호에서 '말씀의 아버지 박윤식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인가?', "박윤식 목사 그는 과연 이단이었다" 라는 제목으로, 원고 박윤식이 1957년부터 1959년 7월까지 2년간 박태선 전도관의 목포 전도관 전도사로 있다가 이성문제로 타의에 의하여 쫓겨났고, 그 후 1961년부터 1962년까지 통일교 본부에서 근무하면서 원리공부를 했다는 등의 내용을 들어 원고 박윤식이 이단이라는 취지의 글을 게재하였다. 그러나 탁명환은 '월간 현대종교' 1990년 8월호에 원고 박윤식은 합동보수교단에 소속한 건전한 목사님인 것을 밝힌다는 취지의 사과문을 게재하였다.

5) 목사 이대복은 1993. 10. 30. '현대종교와 탁명환의 정체, 국제종교문제연구소 비





리와 현대종교 사이비 언론실태'라는 책은 저술했는데, 위 책에는 원고 교회가 이단이 아님에도 탁명환이 원고 교회로부터 돈을 받아내지 못하자 허위사실로 원고 박윤식을 비방하고 원고 교회를 이단으로 허위 조작하였으며, 탁명환이 원고 박윤식을 조작으로 꾸며진 탄원서와 사진을 이용하여 이단으로 판아 엄청난 피해당 입히고 있다는 내용이 있다.

6) 주식회사 한국일보사 등 언론기관들은 1994. 2. 21.과 1994. 2. 22.경 원고 교회의 전신인 '대성교회'에 대하여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 복사로 환동하였고, 전도관과 풍일교 교리란 혼합해 복회환동을 하였다는 취지로 보도하였다가, 원고 교회가 언론중재위원회에 정정보도신청을 함에 따라 위 한국일보사 등은 위와 같은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다면서 그러한 내용으로 정정보도란 하였다.

7) 정정조는 1995. 4. 1. '작은 문선명 박윤식과 대성교회'라는 책자란 발행하였고, 이대복은 1995년 9월 자신이 발행하는 월간잡지 '교회와 이단'에 위 책자의 내용을 게재하였는데, 원고 박윤식이 풍일교 교주 문선명의 제자이고, 원고들의 가르침은 문선명의 것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정정조, 이대복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고등법원(96나50904)은 1998. 2. 10. 위 책자의 내용이 대부분 아무런 근거가 없거나 작성자 또는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에 의존한 것이라고 판단하여 정정조, 이대복에게 손해배상을 명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정정조, 이대복이 상고하였으나 상고기각 판결이 선고되었다.

8) 김영무 등은 2004. 9. 30. '이단과 사이비'라는 책자란 발간하고, 2007. 10. 20. 개정증보판을 발행하였는데, 위 책에는 원고 박윤식이 1958년에서 1959년 7월 사이 목포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근무하고, 1961년에서 1962년 사이 풍일교 본부에서 근무하였다





는 내용이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김영무를 상대로 출판물판매, 배포금지권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2008가합94504)은 2009. 4. 15. 위 내용이 허위라고 판단하여 위 내용을 삭제하거나 말소하지 아니하고는 위 책자권 발행, 판매, 광고, 배포할 것을 금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김영무가 항소(서울고등법원 2009나40655), 상고(대법원 2009다86741)하였으나 모두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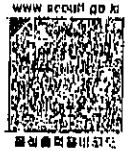
#### 다. 피고들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김영무는 위 소송에서 목포전도관에 있던 김두재 목사란 탁명환이 인터뷰한 내용이라는 서류를 제출하였고, 위 서류에는 박윤식이 1958년 또는 1959년 목포전도관에 있으면서 총각행세를 하며 처녀들을 건드려 대혼란이 있었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으나, 위 서류는 탁명환의 유품에서 발견되었다고 주장되어 진 뿐 그 서류의 작성경위가 명확하지 않고 작성명의인도 기재되어 있지 않으며, 김두재 또한 사망하여 그 작성여부 및 내용의 진위를 전혀 확인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위 소송에서도 법원은 이를 취신하지 않았다.

2) 원고들은 원고 박윤식에 대하여 이단성이 있다는 내용의 광고, 보고서 등을 공표한 총신대학교 총장 및 신학대학원 교수들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 소송(대법원 2008다84236)에서 패소하였으나, 위 재판에서는 원고 박윤식의 설교내용과 표현에 대하여 비판한 내용이 진실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으나, 진실이라고 믿은 상당한 이유가 있다는 이유로 위법성이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권 기각한 것이다. 또한 위 판결에서는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있는지 여부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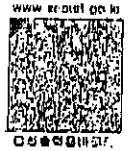
판단대상이 되지 않았다.

3)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2011고정2178)은 2013. 4. 13. 원고들은 이단으로 지목하면서 원고 박윤식이 박태선 전도관의 기관장을 지냈고 원고 박윤식의 교육내용이 통일교 교리와 전도관 교리란 혼합한 것이라는 취지의 설교를 하여 원고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는 범죄사실로 기소된 전윤식에 대하여 무죄판결을 선고하였고,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하여 위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위 법원은 피고인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피해자들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거나 당시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이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판단을 하였을 뿐 원고 박윤식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통일교에 입교한 사실이 진실인지, 허위인지에 대하여 명시적인 판단을 하지는 않았다.

4) 원고 박윤식은 1956년경 전도관 집회에 며칠 간 참석하였고, 통일교 강의장소에 4일간 참석한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사정으로 앞서 본 전도관 지도전도사 박윤식을 원고 박윤식과 동일하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5) 원고 박윤식이 2007. 10. 27. '창세기의 족보' 책자의 서문에서 "사역은 시작한 지 만 50주년 되는 회년을 맞아"라고 기재하고, 2008. 5. 17. '잊어버렸던 만남' 책자의 서문에서 "윤혜로 부족한 종이 주님의 몸된 교회들 섬긴 지 어느덧 51주년을 맞고 있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은 다툼이 없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 1, 갑 제35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 박윤식이 2006. 4. 23. 주일설교를 하면서 48년 전에 목회단 시작하였고 벽문을 찍어서 동마산교회 100평 건물을 지어 목회단 하였다고 말한 사실, 원고 박윤식은 2007년부터 '구속사 시리즈'를 발간하고 있는데 그 중 '창세기의 족보'가 제1권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여기에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각 책자들을 발간할 당시 이





미 원고 박윤식에 대하여 전도관, 통일교와 관련한 이단의혹이 제기되고 있었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 박윤식이 1958년경 동마산교회에서부터 사역을 해오다가 2007년 말경 '구속사 시리즈'를 발간하는 것에 대하여 의미를 부여하기 위하여 50년이 되었다는 언급을 한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 박윤식이 위와 같이 만 50주년 또는 51주년이라는 언급을 하였다고 하여 1957년에 전도관, 통일교 활동을 하였음을 인정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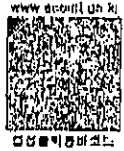
6) 갑 제2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탁명환은 1994. 2. 18. 원고 교회의 기사 임홍천에 의하여 피살되었고, 검찰은 1994년 5월경 원고 박윤식이 박성실로부터 친생자관계 확인소송을 제기당한 상태에서 탁명환이 원고 박윤식의 과거 행적을 알게 되자 입을 막기 위하여 탁명환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다는 취지로 수사결과를 발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한편 갑 제30호증의 2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검찰은 1997. 8. 7. 탁명환이 1990년 8월경 사과문을 게재한 이후 원고 박윤식과 다툼이 없었고, 탁명환이 이미 1983년경 원고 박윤식의 경력과 박성실의 문제를 폭로 하였으므로 원고 박윤식이 탁명환을 살해할 동기가 미약하고, 살해를 지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혐의없음 처분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검찰이 1994년 5월경 발표한 내용을 그대로 믿기는 어렵다.

7) 그 밖에 피고들이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앞에서 인정한 사실을 뒤집고 원고 박윤식이 위 전도관, 통일교에서 활동한 박윤식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8) 전국 피고들의 주장은 이유 없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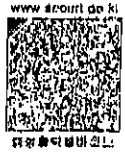
라. 소결론

1) 앞서 본 바와 같이 전도관에서 전도사로 있다가 풍일교에 입교하여 풍일교 북포 교회에서 활동한 박윤식과 원고 박윤식은 동일인이 아니므로, 이란 전제로 하는 피고 회사의 2013. 8. 4.자 기사 [1], [2] 부분 및 2013. 8. 9.자 기사의 [1], [3], [4] 부분 및 [2] 중 1957년 11월경부터 풍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 피고 정윤석의 2013. 6. 24.자 기사 [1] 중 원고 박윤식이 1957년 전도관 화순 전도사로 활동하고, 같은 해 풍일교에 입교하여 원리강론을 배웠다는 부분 및 [2] 부분은 모두 허위의 사실을 적시한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은 언론중재법에 따라 피고들에게 정정보도문의 게재를 구할 권리가 있다.

2) 나아가 피고들이 게재할 정정보도문의 내용과 글자 크기, 환자체, 게재 방법 등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기사의 내용이나 분량, 표현방법, 게재 위치 등 기타 변론에 나타난 여러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별지1], [별지2], [별지3]의 내용을 각각 [별지7], [별지8], [별지9] 기재 각 정정보도문과 같이 수정하여 게재하도록 하되,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일 이내에, 피고 회사는 '교회와 신앙' 인터넷 홈페이지 (<http://www.amennews.com>) 초기화면에 [별지7], [별지8] 기재 각 정정보도문 제목을 풍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환자체로 각 1일 동안 게재하여 이란 클릭하면 위 각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각각 [별지4], [별지5] 기재 각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환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위 게재 기간 경과 후에도 [별지4], [별지5]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 동일한 크기의 환자체로 위 각 정정보도문을 게재하고, 피고 정윤석은 '기독교포털뉴스'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kportalnews.co.kr>) 초기화





면에 [별지9] 기재 정정보도문 제목은 통상 기사 제목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1일 동안 게재하여 이를 클릭하면 위 정정보도문의 제목 및 본문이 [별지6] 기재 정정보도 대상 기사의 본문과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표시되게 하며, 위 게재 기간 경과 후에도 [별지6] 기재 기사의 본문 하단에 동일한 크기의 활자체로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는 것이 상당하다고 인정된다.

3) 한편,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은 종합하면, 피고들이 이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단기간 내에 위 정정보도문을 게재하지 아니할 개연성이 있고, 조속한 명예회복의 필요성도 인정되므로, 피고가 위 정정보도문의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피고는 원고에게 위 기간 만료일 다음날부터 이행완료일까지 1일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게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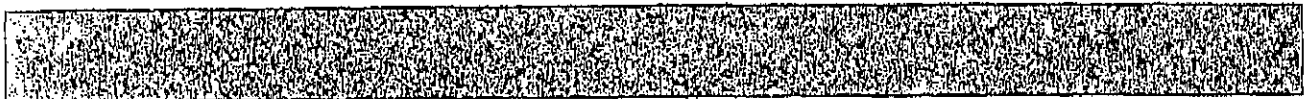
## 6.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고, 또한 제1심 판결 주문 제2의 가항은 "피고 정윤석은" 다음에 "이 판결이 확정된 후 3일 이내에"가 누락된 것이 명백하므로 이를 추가하는 것으로 경정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고의영



2014-0040278435-B10A4

대한법률정보원

19 / 52



판사

권오석

권오석 

판사

유지원

유지원 